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76호 2021. 1. 4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(예천군 공고 제2021-000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월 4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 이유

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적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반되는 규정 삭제 (안 제11조)

3. 개정안 :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1월 1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의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
투자유치팀
- 전화 : 054-650-6232, 팩스 : 054-650-6099
- 전자우편 : seil0407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적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반되는 규정 삭제 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
(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-2904(2019.11.14.)호)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마. 입법예고 : 12월 중 입법예고 추진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사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,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”를 “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<u>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, 사업</u> <u>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</u> <u>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</u> <u>납처분을 할 수 있다.</u>	제11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<u>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</u>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